

□ 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

[시행 2012.11.1] [서울특별시조례 제5382호, 2012.11.1, 제정]

제1조 (목적)

이 조례는 시민청(市民廳)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도모하고, 일반인이 시민청(市民廳)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시민청(市民廳)"(이하 "시민청"이라 한다)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·운영하는 전시, 공연, 행사 공간을 말한다.
2. "대관"이란 시민청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, 공연,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"대관자"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제3조(개관 및 휴관)

시민청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.

1. 1월 1일
2. 매주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)
3.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

제4조(이용료)

- ① 시민청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, 공연,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, 공연, 행사 등의 성격·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제5조(무료이용)

-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1. 국민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4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
5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 6. 65세 이상의 어르신
 7.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
 8.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
 9. 여성결혼이민자
 10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이용의 금지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금지한다.

1. 술에 취한 자
2. 위험물이나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
3.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7조(행위의 제한)

시장은 이용자가 시민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1. 흡연,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
2.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

제8조(대관허가)

- ①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, 공연,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-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 1. 허가목적에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
 2.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대관료)

-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·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. 이 경우 냉·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출한다.
- ③ 대관료의 징수·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0조(대관료 감면)

시장은 서울특별시나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1조(대관자의 준수사항)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시민청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12조(손해배상 및 변상조치) ① 이용자가 시민청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,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.

② 대관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민청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시민청 정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
2. 시민청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민청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(위원회 구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, 공연,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
3. 시민청 소관 담당 국장
4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원하는 때
2. 질병,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

제15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6조(회의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17조(수당 등)

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(운영·관리의 위탁)

- ①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청의 운영·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, 휴관일, 대관,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·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시민청의 운영·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따른다.

제19조(편의시설 설치·운영)

- ① 시장은 시민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청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20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5382호, 2012.11.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